

2026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

1. 지원대상 품목 : 염소고기

2. 지급대상자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
*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
② 염소를 한·호주 FTA 발효일('14.12.12.) 이전부터 생산한 자*

* '생산한 자'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·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, 재배·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

-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,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

- 다만,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

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
3. 지원 기준

◦ 지원 형태 : 지방자치단체 보조 (재원 :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)

◦ 지원 한도 : 농업인 3,500만원, 농업법인 5,000만원

*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

◦ 지급 기한 : '26.12월 말까지

◦ 지원액 산출 : 출하 마릿수 × 지급단가 × 조정계수

◦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: 60,350원/두(추정)

* 향후 조정계수 확정('26.10월)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

4. 신청·접수

◦ 신청 기간 : '26년 8월 3일까지

◦ 신청 장소 :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

*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: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(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)

◦ 신청 서류 :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관련 증빙서류

①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
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1. (2025년 생산 사실 확인) 관내[외]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(별지 제6호의1 서식) 별도 제출 없이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

2. (2025년 판매기록)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

① 2025년의 염소 도축·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

⇒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, 계량증명서, 출하증명서, 세금계산서, 농축협·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통장거래내역서, 택배영수증 등(간이 영수증,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,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)

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

⇒ 농·축협 계약서류 등

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, 도매시장(가축시장)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생산·판매를 증명하는 서류

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별지 제5호의1 서식,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))

-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,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

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
* '26년 지급대상 품목인 “염소고기”의 경우 : 한·호주 FTA 발효일('14.12.12.) 이전

1.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

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·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

⇒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, 계량증명서, 출하증명서, 세금계산서, 농축협·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통장거래내역서, 택배영수증 등(간이 영수증,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)

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, 성축,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

⇒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

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

⇒ 농·축협 계약서류 등

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,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·판매를 증명하는 서류

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(별지 5호의 3서식)

-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,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

④ 기타 서류(필요시)

1. 타인 소유 농지·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⇒ 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 사용료 입금증,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

2.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,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

5. 주요 추진 일정

구분	일정	주요 내용
신청·접수	8.3.까지	○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
전산입력	접수 후 1개월 이내	○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

		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
현지(서면) 조사 및 이의신청	접수 후 1개월 이내	○ 시 또는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○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○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
심사위원회	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	○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, 사업대상자 확정
사업대상자 확정결과보고 (시)	9.16.까지	○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도에 보고
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(도)	9.22.까지	○ 도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
조정계수 산정	10월	○ 농식품부는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도에 통보
자금요청	10.17.까지	○ 도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,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 요청
지급결정서 통보	10.27.까지	○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결정서 통보
집행	12.31.까지	○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, 시군구 또는

		읍면동에서는 자금 집행
지급결과 보고	'27.3.31.까지	○ 시도는 지급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